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38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 박준태・김소희・이양수

최수진 • 주진우 • 정희용

서명옥 · 김위상 · 김성원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및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연히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미비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으나 이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할 우려'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바,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맹점이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살인,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인터넷 등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바, 공공질서와 안전의 관점 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선 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 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8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18조의3(공공장소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8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
	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u><신 설></u>	제118조의3(공공장소흉기소지) 정 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
	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